〈특집:만당 김상현 교수의 학문세계와 그 계승〉

조선시대 문헌에 보이는 『古記』의 史書的 성격에 대한 재검토

이 승호*

- 〈목차〉 -

- I. 머리말
- Ⅱ. 安鼎福斗『東史綱目』所引『古記』逸文
- Ⅲ. 조선 시기 유통된 『古記」의 史書的 성격과 성립 시점
- IV. 맺음말

[국무초록]

본 논문은 조선시대 여러 역사 문헌에 나타나는 『古記』 逸文에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古記』에 대한 새로운 연구 가능성을 제시한 2012년 김상현 교수의 발표 문으로부터 출발한다. 본문에서는 선행 연구를 찬찬히 따라가면서 安鼎福이 구해 보았다는 『古記』 一冊을 실마리 삼아 조선 시기 여러 문헌에 보이는 『古記』와 관련한 언급 및 그 逸文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安鼎福이 보았다는 『古記』는 조선 초 李居仁의 손을 거치며 만들어진 일종의 '古記拾遺'와 같은 성격의 사서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이렇게 조선 초에 만들어진 李居仁의 『古記』는 고려 시기 각종 문헌에 보이는

^{*}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HK+사업단 HK교수

『古記』 및 『舊三國史』 逸文을 수습하여 정리한 기록들이 중심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 며, 또 이밖에 당시까지 민간에 전하던 고대 전승이 수집되어 일부를 이루었던 것으 로 추정된다. 이 책이 조선 시기 여러 문인들에 의해 그 사서로서의 가치가 철저하 게 부정되고 외면당하였던 이유는 물론 그 기록이 가지는 특수성에 기인한 면이 크 겠지만, 이와 함께 그와 같은 사서적 성격도 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주제어 고기(古記), 구삼국사, 안정복, 동사강목, 이거인(李居仁)

I. 머리맠

익히 잘 알려져 있듯이 『古記』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 이전에 성 립한 역사서이며, 두 사서를 편찬하는 과정에 주요 인용 자료이자 典據ㆍ대 조 자료로 이용되었다. 이는 『古記』・『三韓古記』・『海東古記』・『本國古 記』・『高麗古記』・『百濟古記』・『新羅古記』・『諸古記』 등 다양한 명칭으 로 나타나며, 『삼국사기』에 24건, 『삼국유사』에 14건 인용되었음이 확인되 고 있다. 또 이밖에 『삼국사기』 등에서 인용 서명을 밝히지 않은 많은 기사 가 『고기』에 전거를 두고 있거나 '『고기』 계통의 사료'에 기초하여 작성되 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進三國史[記]表 에서 김부식은 『古記』에 대 해 중국사서에 대비되는 '本國史書'의 위상을 부여하고 있음을 본다. 1)

그간 학계에서는 『고기』가 차지하는 이와 같은 역사적 위상에 부응하

¹⁾ 李康來, 『三國史記 典據論』, 民族社, 1996, 114쪽.

여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연구를 쌓아 왔다. 특히 연구 초창기에는 李奎 報의「東明王篇」所引『舊三國史』와『고기』의 관계에 관심이 모아졌고, 곧 『고기』가 『구삼국사』였다는 견해도 제기된 바 있다.²⁾ 그러나 『고기』를 둘러싼 이해가 심화되면서 『구삼국사』를 『고기』와 동일시하는 의견은 크 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³⁾ 이후 논의의 초점은 『고기』의 史書的 성격 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인용된 『고기』 逸文 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를 단일 사서로 이해하는 견해가 일찍부터 여 러 연구자를 통해 제기되어 왔다.⁴⁾ 그러나 이강래의 정밀한 연구를 기반 으로 『삼국사기』 워전 자체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제시되면서.⁵⁾ 이를 단 일 사서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한국 학계에서는 단단한 정설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2년 4월에 열린 한국고대사학회 제125회 정기발표회에서 『고기』가 11세기 전반으로부터 12세기 중반 사이 어느 때에 고려에서 편 찬된 삼국의 역사를 담은 '단일 사서'라는 김상현 교수의 신설이 발표되었 다. 김상현 교수는 『삼국사기』・『삼국유사』 성립 이후 시기 문헌에 나타나 는. 특히 조선 시기에 찬술된 여러 문헌에서 발견되는 『고기』 逸文을 종 합·정리하여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고기』의 사료적 성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6 즉 『고기』는 『三國史記』 · 『三國潰事』 이전에 편찬

²⁾ 정구복, 「三國史記의 原典 資料」, 『三國史記의 原典 檢討』, 韓國精神文化研究, 1995.

³⁾ 申東河、「三國史記 高句麗本紀의 引用資料에 관한 一考」、『三國史記의 原典 檢 討」; 李康來, 『三國史記 典據論』; 김상현, 「『古記』의 사학사적 검토」, 『한국고대사 연구』 74, 2014.

⁴⁾ 김영경.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보이는 〈고기〉에 대하여. 『력사과학』 1984-2; 김정배,「檀君記事와 관련된「古記」의 性格」, 『韓國古代史上의 諸問題』, 韓國精神 文化研究, 1987; 申東河、「三國史記 高句麗本紀의 引用資料에 관한 一考」。

⁵⁾ 李康來, 「三國史記斗 古記」, 『龍鳳論叢』 17』: 『18, 1989; 「『三國遺事』 引用「古 記,의 性格,『書誌學報』7, 1992;「제Ⅱ장. 古記論」。『三國史記 典據論』.

된 단일 역사서로 이것이 조선 후기까지 전해져 문인들에 의해 읽혀졌다. 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필자는 운이 좋게도 2012년 당시 발표회를 앞두고 분주하 셨던 선생님 곁에서 관련 자료의 정리를 도우며 글이 작성되는 과정을 지 켜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구두발표는 정식 논문으로 발표되 지 못하고 '說林'으로서 학계에 소개되었다. 당시 정년을 앞두고 분주하셨 던 선생님께서는 당장은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 대학에서의 생활을 마무리 한 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보완하여 한층 정제된 논문으로 학계에 재차 발표하고자 하셨다. 이 글은 2012년 선생님께서 제시한 문제의식에 기반 하여 당시 미처 다 언급하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약간의 논의를 보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통해 2012년에 제시된 『고기』와 관련한 새로운 자료와 시각이 다시금 학계에서 활발하게 검토되기를 바랄 뿐이다.

Ⅱ. 安鼎福斗『東史綱目』所引『古記』逸文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1756년 順蕃 安鼎福이 星湖 李瀷에게 보낸 편지 속 다음의 구절을 주목해보고자 한다.

사豆(フト):『順番先生文集』 巻10、書、東史問答・上星湖先生書[丙子]

三國史는 구해 볼 방법이 없었는데 전번에 마침 친우 權巖이 찾아와서 그 사정을 듣고는 빌려 보여주니 다행입니다. 대충 훑어보니 이 책은 비록 正史 라고는 하나 문헌을 징빙할 수 없습니다. 단지 연대만 이어놓고 또 중국의 역

⁶⁾ 김상현, 「『古記』의 사학사적 검토』.

사책을 가져다가 메워 놓았을 뿐입니다. 중국 사람이 外夷의 일을 전한 데에 반드시 잘못이 많을진대. 모두 변별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한스럽습니다. …(중 략)… 구해 본 古記 一冊은 바로 新羅의 俚俗을 전하는데, 高麗에서 成書된 것으로 대부분이 靈怪之說이고 僧家의 말이 과반입니다. 三國遺事도 역시 고 려의 중 一然이 찬한 것인데, 그 책은 대개 불가의 문자를 찬한 것이나 또한 國事에 언급된 것이므로 더러 채택할 만한 것이 있지만 역시 허황된 말이 많 습니다. 아! 우리나라(東國)는 고래로 어찌 옛일을 기록한 저술을 남긴 선비 하 나가 없어서 이 중의 불경스러운 책만이 후세에 전하는 것입니까.⁷⁾

위의 편지를 보면 안정복은 이익에게 "古記 一冊"을 구해 보았음을 밝 히고 있다. 新羅의 俚俗을 전하면서도 대부분이 靈怪之說이고 僧家의 말 이 과반이었다며 "古記"의 내용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그가 실제 책을 보 았음을 의심하기 어렵다.⁸⁾ 또 바로 뒤이어 『삼국유사』에 대한 언급이 이 어지고 있어. 안정복이 『고기』와 『삼국유사』를 혼동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 다. 그렇다면 위에서 "古記 一冊"이라는 표현에 근거할 때, 당시 안정복이 본 『고기』는 한 권의 책으로 엮어진 자료임은 분명한 것 같다. 즉 안정복 이 『고기』라는 모종의 서책을 직접 보았음은 일단 긍정할 수 있다.

문제는 당시 안정복이 보았다는 "고기」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인용된 사서 『고기』와 같은 책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우선 이를

^{7) 『}順菴先生文集』 卷10, 書, 東史問答 · 上星湖先生書[丙子], "三國史無從求見, 向 適權友巖來訪, 聞知其由, 爲之借示, 伏幸. 畧綽看過, 此書雖謂正史, 而文獻無 徵. 只能繼其年代, 又取中國史以實之. 中國人傳外夷事, 固多謬誤, 皆不卞別, 是可恨也. …(中略)… 得見古記一冊, 是新羅俚俗之傳, 而成於高麗, 多是靈怪之 說, 而僧家言語過半. 三國遺事, 亦是麗僧一然所撰, 其書盖撰僧家文字, 而亦爲 言及國事, 故或有可採者, 而亦多荒誕之語, 噫, 東國古來, 豈無一箇著述記古之 士,而獨此緇髡不經之書."

⁸⁾ 김상현,「『古記』의 사학사적 검토」.

파악하기 위해 그가 쓴 『東史綱目』에 확인되는 『古記』에 대한 다른 언급 들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사료 (나)-①: 『東史綱目』 凡例, "災祥"

동방의 역사는 삼국 때부터 비롯되었으므로 삼국 이전은 전혀 고증할 데가 없다. 이제 이 책에서는, 단군과 기자의 사적은 『古記』및 중국사서의 여기 저기에서 따다가 만들었고, 삼한의 始終도 전해지지 않은 것은 중국의 사서에서 따다가 보충해 넣었다.⁹⁾

사료 (나)-②: 『東史綱目』凡例, "採據書目"

東國書籍. 『三國史記』. 고려 金富軾의 撰이다. 本紀·列傳·雜志·年表가 있는데 모두 50권이다. 【안】삼국 당시에는 각기 사관을 두어 일을 기록하였으나, 고구려·백제 두 나라는 隋唐의 정벌이 있었고, 신라 말에는 甄萱과 弓裔가 번갈아 난을 일으켰으므로, 역대의 문적은 모두 상고할 데가 없었다. 길씨가 『삼국사기』를 찬할 때에, 신라에 있어서는 남아 있는 本史에 따랐고, 고구려와 백제에 있어서는 더욱 상고할 데가 없으므로 이른바 『古記』에 단편적으로 전하는 것에 의거하였는데, 삼국에 대하여 모두 중국 역사에서 따다가 보충하였으므로, 이 책이 소략하고 오류가 많아 사가의 규모를 이루지 못하였다. 김씨는 將相의 지위에 있으면서 임금의 하교를 받아 역사를 찬집하였으니, 문적을 널리 가져오고 또 책을 바칠 길을 열어 놓았어야 할 것인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간략하게 책을 만들었으므로, 식자들이 한스럽게 여긴다.

사료 (나)-③: 『東史綱目』 第1上, "己卯 朝鮮 箕子 元年"

⁹⁾ 이하에서 제시하는 『東史綱目』 및 『煋所覆瓿藁』 인용 기사는 모두 한국고전번역 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DB 《한국고전종합DB》로부터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안】 『東方古記』 등에 적힌 단군에 관한 이야기는 다 허황하여 이치에 맞 지 않는다. 단군이 맨 먼저 났으니, 그 사람에게 신성한 덕이 있으므로 사람들 이 좇아서 군으로 삼았을 것이다. 예전에 신성한 이가 날 적에는 워낙 뭇사람 과는 다른 데가 있었으나, 어찌 이처럼 매우 이치에 안 맞는 일이 있었으라. 고 기에 나오는 桓因帝釋이라는 칭호는 法華經에서 나왔고, 그 밖의 칭호도 다 중들 사이의 말이니, 신라·고려 때에 불교[異敎]를 숭상하였으므로, 그 폐해가 이렇게까지 된 것이다.

사료(나)-④: 『東史綱目』 附卷上中, "怪說辨證"

『古記』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옛날에 柜因帝釋의 庶子 柜雄이 있었다. … 상고하건대 이 말은 너무 허황하여 변증할 수 없으니, 『通鑑』에서 생략한 것이 옳다. 무릇 단군이란 우리나라의 맨 처음 임금으로서 그 사람은 필시 신 성한 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임금으로 삼았을 것이다. 물론 옛날 신성의 탄생이 실로 여느 사람과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찌 그처럼 無 理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대개 『三國遺事』란 고려의 僧이 지은 것이요. 『古記』 또한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으나 신라 俚俗의 호칭에서 나와 고려 때 이루어졌으니, 역시 중의 편집일 것이다. 그러므로 허황한 말을 부질없이 많이 하여 그 인명·지명이 佛經에서 많이 나왔다. 여기서 말한 桓因帝釋 역시 法 華經에서 나왔는가 하면, 기타 이른바 阿蘭佛·迦葉原·多婆羅國·阿踰陁國 의 따위가 모두 중의 말이다. 신라·고려 시대에는 불교를 존승하였기 때문에 그 폐단이 이와 같은 데까지 이르렀다. 역사를 쓰는 사람이 그 기록할 만한 사 실이 없음을 민망히 여겨 심지어는 이 같은 것을 정사에 엮어, 한 구역 어진 나 라를 모두 괴이한 무리로 만들었으니 너무나 애석한 일이다.

사료(나)-⑤: 『東史綱目』 附 卷上 下. 雜說. "三韓後說"

우리나라 사서에 三韓의 시종이 없기 때문에 金氏는 상고할 데가 없었으

므로 이처럼 의심나는 말을 하였다. 三國이 싸우던 즈음의 문헌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김씨가 역사를 찬술할 때 다만 신라의 유적 및 『海東古記』 같은 류에서 뽑아 엮었고, 중국 역사 중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록인 듯싶은 것을 인 용하여 쓴 것이 거의 절반이나 된다.

사료(나)-⑥: 『東史綱目』附卷上下,雜說,"三國始起"

삼국 시대에는 날로 전쟁을 일삼더니 급기야 말년에는 隋‧唐이 분탕질하 였고, 甄萱·弓裔가 난을 일으켰으니, 비록 國史로 전해지고 私家의 기록이 있었더라도 어떻게 탕진되어 없어지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그리하여 金氏가 역사를 쓸 때에 상고할 만한 文籍이 없는 실정이라, 다만 우리나라 사실이 언 급된 中國史 및 『東國古記』의 허술한 문자를 취하였을 뿐이요, 신라의 居漆 夫, 고구려의 李文眞, 백제의 高興이 기록한 國史는 듣지 조차 못하였다. 중국 에서 外蕃의 일을 기록한 것이 대부분 부실하고 『古記』의 전설 역시 또한 몹 시 허황한 것이라, 비록 三長의 특재가 있다 하더라도 撰述하기에 실로 어려 웠을 것이다. 그러나 史局을 설치하여 역사를 찬술하는 책임은 몹시 중대한 것인데, 자료를 제공할 길을 열어 총명을 넓힐 줄 모르고 부족한 그대로 간략 한 기록에 그치고 말았으니 그 한 가지가 유감이다. 내 일찍이 『高麗史』를 보 다가 元 나라 사람이 『遼史』와 『金史』를 編撰할 때 우리 나라에 사람을 보내 어 遼・金과 관계되는 문자를 구하여 갔다는 사실을 알았다. 중국인의 처사가 이처럼 詳博함을 볼 때에 거듭 富軾을 위하여 개탄한다.

위에서 열거한 사료 (나)를 살펴보면 안정복은 『古記』에 대해 古記라 는 서명 외에도 『東方古記』・『海東古記』・『東國古記』 등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사료 (나)-⑥에서 보듯 이는 곧 『古記』로 약칭된다. 『古記』에 대 한 안정복의 인식은 상당히 비판적인데, 이에 대해 金富軾이 『三國史記』 를 찬술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와 백제의 경우 『古記』 혹은 『海東古記』에 많이 의지했다는 점, "『東國古記』의 허술한 문자"라는 구절에서 보듯 그 조차 전하는 내용이 상당히 졸약하다는 점, 『東方古記』 등에 적힌 단군에 관한 전승 등이 허황하며 불교적 관념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 등을 날카롭 게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사료 (나)-④에서 보듯 또한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으나 『古記』가 고려 때 승려에 의해 찬술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음 도 확인된다.

이러한 안정복의 언급은 그가 서책으로서의 『古記』를 봤다는 증언으 로 간주할 수도 있겠다. 다만, 안정복이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古 記類의 사서들이 인용된 여러 사례를 두고 쓴 서술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 에 확단하기는 이르다. 특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東史綱目』을 저술하 면서 직접 참고한 "採據書目"이다. 한국고대사와 관련하여 여기에 언급된 "東國書籍"은『三國史記』와『三國史略』(곧『東國史略』),『三國遺事』 뿐 이며, 정작 안정복 본인이 구해서 보았다는 『古記』는 적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보아 과연 안정복이 서책으로 엮어진 『古記』를 실제 보았던 것인지 의심이 남게 된다. 10) 결국 안정복이 보았다는 『古記』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東史綱目』에 직접 『古記』가 인용된 구절을 하나하나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소 장황하지만, 『東史綱目』에 확인되는 『古記』 의 인용 사례를 모두 제시하고 그와 대응되는 전거가 될 만한 문헌기록을 찾아 그 아래 적시해 두었다.

사료 (다)-①: 『東史綱目』 第4 下, "壬辰 十二年[孝昭王 元年]"

8월 元盲을 중시로 삼았다. 沙飡 任强首가 죽었다. … 『新羅古記』에 "문 장으로 말하면, 强首·帝文·守眞·良圖·風訓·骨香이었는데, 제문 이하는 사

¹⁰⁾ 이는 2012년 김상현 교수의 발표 당시 토론자로 나섰던 이강래 교수의 토론문에서 이미 지적된 부분이기도 하다.

적이 빠져서 전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다.

⇒『三國史記』 卷46. 列傳 6. 强首傳 所引 『古記』와 상응

사豆(叶)-②: 『東史綱目』 附 卷上上, 考異, "檀君元年戊辰, 當唐堯二十五年" 또 상고하건대, 고려의 중 無極 一然이 『三國遺事』를 撰述하면서 『古記』 를 인용하여, "檀君은 唐堯 50년 庚寅에 즉위하였다." 하고. 그 自註에. "堯의 원년은 戊辰이므로 50년은 丁巳요 경인이 아니다." 하여 …

➡『三國遺事』 卷1, 紀異 1, 古朝鮮・王儉朝鮮 所引 『古記』와 상응

사료 (다)-③: 『東史綱目』 附 卷上 上, 考異, "王儉"

『古記』 및 『삼국유사』에 인용된 『魏書』에 모두, "단군의 이름은 王儉이 다." 하고, 『三國史』에는, "平壤이란 본래 仙人 왕검의 집이다." 하고, 단군의 이름이라고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東國涌鑑』에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 다. 지금 취택하기는 하였으나 의심이 간다.

➡『三國遺事』 卷1, 紀異 1, 古朝鮮・王儉朝鮮 所引 『古記』와 상응

사료(다)-④: 『東史綱目』附 卷上 上, 考異, "檀君薨"

『古記』에. "檀君은 戊辰에 堯와 並立하여 虞·夏를 거쳐 商의 武丁 8년 乙末에 阿斯達山에 들어가 神이 되고 1천 48세의 壽를 누렸다." 하였는데, 지 금『經世書』 및 여러 역사를 상고하건대. 무정 8년은 甲子가 되고 39년이 을 미다. 堯의 무진부터 무정 8년 갑자까지는 1천 17년이 되고 을미까지는 1천 48년이 되니, 『古記』의 말과 같이 본다면 이 어찌 享國 1천 17년에 享壽가 1 천 48세란 뜻이 아니겠는가. 이제 『경세서』에 의거하여 무정 8년 갑자로 기록 하다

➡『帝王韻紀』 巻下. 初誰開國啓風雲에서 所引『[檀君]本紀』와 유사

사료 (다)-⑤: 『東史綱目』 附 卷上 上, 考異, "後漢書夫餘之誤"

『東國古記』에도 북부여가 檀君에서 나왔다 하였다.

⇨ 출처 불분명

사료 (다)-⑥: 『東史綱目』 附 卷上 上, 考異, "泉蓋蘇文"

【안】 『삼국유사』에, "『唐書』를 보니 '전에 隋煬帝가 遼東을 정벌할 때 羊 Ⅲ이라는 裨將이 전쟁에 불리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는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의 죽은 혼이 반드시 고구려의 寵巨이 되어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하더 니, 蓋氏가 專權함에 이르러 盖로써 성씨를 삼으니 곧 羊皿의 응함이다.' 하 고. 『高麗古記』 역시 '고구려왕이 表文을 올려 항복을 청할 때에 한 사람이 비 밀히 품속에 조그마한 활을 지니고 사신을 따라 煬帝가 탄 배에 들어가서, 양 제가 표문을 들고 읽을 때 활을 쏘아 가슴을 맞혔는데, 양제가 회군하여 돌아 갈 때 좌우에게 이르기를 "내가 천자가 되어 小國을 친히 정벌하다가 이익을 보지 못하였으니 천추만대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하였다. 이때 右相 羊皿이 아뢰되 "신이 죽어 고구려의 대신이 되어 그 나라를 꼭 멸망시키고 제왕의 원 수를 갚겠습니다." 하더니, 뒤에 과연 고구려에 태어나 15세에 총명하고 神武 하였다. 이에 왕이 그의 어짊을 듣고 불러들여 신하를 삼았는데, 자칭 성은 羔, 이름은 숲이라 하였으며, 지위는 蘇文의 職에까지 이르렀으니 곧 侍中의 적이 다.' 하였다." 하였다. 이제 이에 기록하여 一說로 갖추어 두나, 소위 羊皿의 설 은 너무 허황하여 믿을 수가 없다.

⇒『三國遺事』 卷3, 興法 3, 寶藏奉老 普德移庵 所引『高麗古記』와 상응

사료(다)-⑦: 『東史綱目』 附 卷上 上, 考異, "蓮花夫人"

『古記』에 "주원과 경신은 同母兄弟이다. 어머니는 溟州 사람으로 처음 蓮 花峯 밑에 살았으므로 蓮花夫人이라 호칭하였는데, 주원이 명주에 봉해지자 부인은 주원에게 봉양을 받았다. 왕은 한해에 한 차례씩 와서 문안하였으며, 4 代 만에 국호를 없애고 州로 만들었다." 하였다. 그렇다면 蓮花夫人이 주원의 어머니요, 경신과 同母라는 설은 곧 『古記』의 誤錄인 듯하다. 이제 취하지 않 는다. ⇨ 출처 불분명

사료 (다)-⑧: 『東史綱目』附 卷上 上, 考異, "甄萱別傳"

金氏[一然]는 또 『古記』의 말을 인용하였으나 역시 허황한 말이다. 『古記』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옛날에 한 부자가 光州 北村에 살았는데, 딸 하나가 있어 외모가 단정하였다. 그 딸이 아비에게 하는 말이 '매양 자주색 옷을 입은 남자가 제 침실에 들어와 관계합니다.' 하니, 그 아비가 딸에게 '네가 긴 실을 바늘에 꿰어 그 남자 옷에 꽂아 두어라.' 하고 일렀다. 딸은 이와 같은 아비의 말을 따랐는데, 날이 밝자 바늘에 꿴 실을 북쪽 담 밑에서 찾아보니, 바늘이큰 지렁이의 허리에 꽂혀 있었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한 사내아이를 낳았는데, 15세가 되자 자칭 甄萱이라 하더니, 뒤에 王으로 참칭하고 完山에 도읍을세웠다.

⇒『三國遺事』2、紀異3、後百濟甄萱 所引『古記』와 상응

사료(다)-⑨: 『東史綱目』附 卷下, "檀君疆域考"

단군의 강역은 상고할 수 없지만, 箕子가 檀氏를 대신하여 왕 노릇하였는데 그 提封의 반이 곧 遼地였으니, 단군의 시대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u>『古</u>記』에 北夫餘는 단군의 후손이다 하였다. ➡ 출처 불분명

사료 (다)-⑩: 『東史綱目』附 卷下. "馬眥水考"

『응제시주』에는, 『古記』에 '扶餘城 북쪽에 靑河가 있는데 그 何伯의 딸이 柳花이다.'한 것을 인용하여, "청하는 지금의 압록강이다." 하였는데, 잘못이다.

⇒ 출처 불분명

이상에서 제시한 사료 (다)는 『東史綱目』에 인용된 『古記』 사례 가운 데 뒤에서 별도로 검토할 "怪說辨證"을 제외하고 정리한 것이다. 위에서 보듯 제시된 총 10개소의 인용 구절들은 대체로 『三國史記』 및 『三國遺 事』 所引 『古記』 내용, 그리고 『帝王韻紀』 所引 『檀君本紀』 내용과 일치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출처가 불부명한 인용 사례가 네 건 확인되는데. 사료 (다)-⑤·⑦·⑨·⑩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사료 (다)-⑤의 "『東國古 記』에 북부여가 檀君에서 나왔다 하였다."는 대목 및 사료 (다)-⑨의 "『古 記」에 北夫餘는 단군의 후손이다 하였다."는 대목은 모두 직접 인용 사례 를 찾을 수는 없지만, 『三國遺事』 紀異 1, 高句麗 所引 『檀君[本]記』의 "[壇]君이 西河 河伯의 딸과 상관하여 아이를 낳으니 이름을 夫婁라고 하 였다."는 대목과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삼국유사』 해당 인용문 바로 앞 에는 一然이 '『國史』 高麗本記'(곧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기록을 인용 하여 해부루가 처음 북부여 왕이었음을 밝히고 있어. 이를 통해 북부여가 단군의 후손이라는 인식이 도출된 것일 수 있다. 또는 『帝王韻紀』 所引 『[檀君]本紀』에서 "尸羅, 高禮, 南北沃泪, 東北夫餘, 濊貊이 모두 단군의 후손이었다."는 구절이나 단군이 "非西岬의 河伯의 딸과 혼인하여 사내아 이를 낳고 夫婁라 이름을 지었다."는 등의 구절과 닿아 있는 서술이라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사료 (다)-⑩의 경우에는 李奎報의 『東明王篇』 구절 에 "성 북쪽에 靑河가 있으니[靑河는 지금의 鴨綠江이다.] 河伯의 세 딸 이 아름다웠다[長女는 柳花, 次女은 萱花, 막내는 葦花라 불렀다]."라는 구절에서 비롯한 것이라 이해된다.

이렇게 본다면 앞서 제시한 『東史綱目』의 『古記』 인용 구절은 자구 상 약간의 차이나 내용의 상략이 있을지언정 대체로 『三國史記』・『三國 遺事』・『帝王韻紀』・「東明王篇」 등에 인용된 『古記』 혹은 『舊三國史』 逸文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 『東史 綱目』에 인용된 『古記』 逸文은 안정복이 보았다는 서책으로서의 『古記』

로부터 비롯한 것이라기보다는 『三國遺事』 등에 인용된 『古記』 逸文을 가져온 것일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기에는 사료 (다)-⑦이 문제가 된다.

사료 (다)-⑦의 『古記』 逸文에 전하는 蓮花夫人 전승은 許筠(1569~ 1618)의 시문집인『煋所覆瓿藁』에 자세히 전하며. 丁若鏞의『與獨堂全 書』附, 雜纂集 1(『文獻備考刊誤』 卷7, 輿地考)에도 보인다.

사료 (라)-①: 『惺所覆瓿藁』 卷7. 文部 4. 記. "鼈淵寺古迹記"

江陵府의 남쪽에 큰 내가 있고 그 내의 남쪽에 鼈淵寺가 있으며, 그 절 뒤 쪽 언덕은 蓮花峯이다. 노인들이 전하기를 周元公 어머니 蓮花夫人이 여기에 살았으므로, 이를 따서 봉우리의 이름을 삼았으며 절은 곧 그 옛집이라고 한 다. 절 앞에는 石池가 있는데 이름을 養魚池라고 한다. …… 병신년 봄에 寒岡 鄭[逑] 선생이 관찰사로서 순행하다 平昌郡에 이르렀는데, 그 군이 東原京 시 절에는 府에 속했으므로 군 사람 중에 지금토록 부의 일을 이야기하는 자가 있 었다. 선생이 옛 牒을 두루 물어 首吏에게서 『古記』를 얻었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게 보여주었으므로, 마침내 살펴보니 府事 李居仁이 쓴 글이 많은데 그 중에 蓮花夫人의 사적이 매우 자세히 실려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적은 다 음과 같다.

"신라 때 명주는 동원경이었으므로 留後官은 반드시 왕자 및 宗戚·將相 • 大臣으로 하여금 맡게 하고 凡事에 그 예하 郡縣에는 편의대로 黜陟하게 하 였다. …… 이로써 주원은 마땅히 즉위해야 했음에도 즉위를 못하고, 강릉 땅 에 封해져서 주변의 여섯 읍을 받아 溟原郡의 왕이 되었다. 부인은 주원에게 가서 봉양을 받았는데, 그 집을 절로 만들었으며, 왕은 1년에 한 번씩 와서 뵈 었다. 四代에 이르러 나라가 없어지고 명주가 되면서 신라도 망했다."

나는 이를 보고서야 비로소 養魚池의 고사를 남김없이 알게 되어 마치 구 름을 헤치고 해를 본 듯했다. 더욱이 府 노인들이 한 이야기의 간략함과 『輿地 勝覺』에 편찬된 것의 조잡함을 알게 되었다. 내 돌아가신 어머님은 주원의 후 예이시니, 곧 부인은 또한 나의 조상이 된다. 어찌 감히 오래도록 다른 이의 이 름으로 내가 나온 근원을 더럽히고 욕되게 할 까. 인하여 갖추어 기록하여 府 의 掌故로 삼는다.

사료(라)-②: 『與猶堂全書』附, 雜纂集 1(『文獻備考刊誤』 卷7, 輿地考)

26號. 周元이 溟州로 退居하였다. [『古記』에 周元의 母는 溟州人이니 처 음 蓮花峯 아래에 살아서 蓮花夫人이라 불렀다. 溟州曲은 마땅히 新羅樂府 에 속한다고 하였다.] 案, 溟州曲과 蓮花夫人의 事는 털끝만큼도 상관없다. 이것 또한 傅會일 뿐이다.

許筠에 의하면 鄭逑(1543~1620)가 관찰사로 재직할 당시 平昌郡 首 東로부터 얻은 『古記』를 그도 보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李居仁이 쓴 글이 많다고 하였다. 그런데 李居仁은 至正年間(1341~1367)에 강릉부사를 역 임했던 여말선초 시기의 인물이다. 이에 고려 전기에 편찬된 『古記』에 李 居仁의 글이 덧붙여진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하지만. 11) 실상 고려시기 문 헌에서 보이지 않는 고대 역사 관련 『古記』 逸文은 이것뿐이라 가볍게 넘 기기 어렵다. 어쩌면 이것이 조선시기 일부 문사들이 보았다는 『古記』의 사서적 성격에 접근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우선은 이렇 게 가단히만 짚어 두고 좀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미뤄두었던 『東史綱目』 "怪說辨證"에 보이는 『古記』 逸文을 마저 검토해보도록 하자.

사료(叶)-①『東史綱目』附 卷上 中,"怪說辨證"

『古記』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옛날에 桓因帝釋의 庶子 桓雄이 있었다.

¹¹⁾ 김상현, 「『古記』의 사학사적 검토」, 290쪽.

환인 제석이 三危太伯을 내려다보니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하므로, 한응에게 天符印 3개를 주어 내려 보내 인간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응은 그무리 3천 명을 거느리고 太伯山 꼭대기 神檀樹 밑에 내려와서 이곳을 神市라 불렀으니, 이분이 곧 桓雄天王이다. 그는 風伯·雨師·雲師를 거느리고 곡식·수명·질병·형벌·선악 등을 맡아보게 하여 인간의 3백 60가지 일을 주관하고 인간 세계를 다스려 교화시켰다. 이때 곱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한 굴에서 살며 늘 환응에게 사람 되기를 빌었는데, 한번은 환응이 신령스러운 쑥 한모숨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1백일 동안 日光을 보지 아니하면 곧 사람이 되리라.' 하였다. 곰과 범은 이것을 받아 먹었는데 범은 이를 능히 참아내지 못하였으나 곰은 37일을 참아서 여자의 몸이 되었다. 여자가 된 곰은 그와 혼인해 줄 상대가 없어 늘 檀樹 밑에서 아이 배기를 축원하였다. 환응이 이에 잠깐 변하여 그와 혼인하니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檀君이다." 하였다. 『三國遺事』에도 같다.

⇒ 『三國遺事』 卷1, 紀異 1, 古朝鮮・王儉朝鮮 所引 『古記』와 상응

사료 (마)-② 『東史綱目』 附 卷上 中, "怪說辨證"

『古記』에 이렇게 되어 있다. "檀君이 非西岬 河伯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았으니 이가 夫婁인데, 禹 임금이 塗山에서 회합을 가질 적에 부루를 보내어 조회하게 하였다. 뒤에 北扶餘王이 되었는데, 늙어 아들이 없으므로 하루는 대를 이을 아들을 빌고서 鯤淵에 이르렀다가 小兒를 얻어 길렀으니 그 것이 金蛙이다. 금와가 아들 帶素에게 전하였는데, 高句麗 大武神王에게 멸망되었다. …"

또 『여지승람』에, "최치원이 지은 僧 利貞傳에 '伽倻山神 政見母主가 곧 天神 夷毘訶에게 情感되어 大伽倻王인 惱窒朱日과 金冠國王인 惱窒靑裔 를 낳으니, 뇌질주일은 곧 大伽倻 시조 伊珍阿豉王의 별칭이요, 청예는 수로 왕의 별칭이다.' 하였으나 『駕洛國古記』에서 말한 六卵의 설과 함께 허황하여

믿을 수 없다." 하고, …

- ⇒ 『帝王韻紀』 卷下, 因分此地爲四郡 所引 『(檀君)本紀』와 유사
- ➡ "禹 임금이 塗山에서 회합을 가질 적에 부루를 보내어 조회하게 하였 다."는 구절은 출처 불분명

사료(마)-③『東史綱目』附 卷上 中, "怪說辨證"

權擥의 『應製詩註』에 『古記』를 인용하여 이르기를, "天帝가 太子인 해모 수를 보내어 扶餘의 古都에 하강하게 하였는데, 그는 五龍車를 타고, 따르는 사람은 1백여 명으로 白鵠를 탔다. 채색 구름이 그 위에 떠 있고 음악 소리가 구름 속으로부터 들려오더니 熊心山에 머물러 10일을 지난 뒤에 비로소 하강 하였다. 머리에 鳥羽冠을 쓰고 龍光劒을 찼는데, 아침에는 정사를 듣고 저녁 에는 하늘로 올라가므로 세상에서 이를 天王이라 하였다. 이때는 곧 漢 宣帝 神爵 3년 임술 4월 8일이다." 하였고, 『삼국유사』에서 인용한 것 역시 같되 더 욱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삼국유사』에는. "古都는 곧 紇升骨城이니 大遼 醫 州에 있다." 하였다.

➡ 李奎報 「東明王篇」所引 『舊三國史』 逸文과 상응

사료 (마)-④ 『東史綱目』 附 卷上 中, "怪說辨證"

『古記」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주몽이 차차 자라매 금와의 일곱 아들은 항상 주몽과 함께 놀며 사냥하였다. 왕자는 從者 수십 명과 사냥하여 사슴 한 마리를 잡았는데, 주몽은 사슴을 많이 잡았다. 왕자는 곧 주몽을 나무에 결박 해 놓고 사슴을 빼앗으니 주몽은 나무를 뽑고 갔다. 태자 帶素가 왕에게 아뢰 기를, "주몽은 사람의 소생이 아니요 또 신기로운 용맹이 있으니, 만약 일찍 처 치하지 아니하면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나 왕은 듣지 않고 그로 하여금 말[馬]을 기르게 하였다. 주몽이 원망하며 어머니에게, "내가 천제의 아 들로서 남의 말이나 먹이고 있으니 죽느니만 못합니다. 남쪽 지방에 가 나라를 창건하고자 하나 어머니가 있어 감히 못합니다." 하니,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이는 나 역시 腐心하는 바이다. 내 들으니 사람이 먼 길을 발섭하려면 모름지 기 駿馬가 필요하다 하였다." 하고, 그 어머니는 곧 마판에 가 긴 채찍으로 말 을 난타하였다. 모든 말이 모두 놀래어 달아나는데 붉은 말 하나가 두 길이나 넘는 난간을 뛰어 넘었다. 주몽은 그 말이 준마임을 알고 남몰래 말의 혀에 바 늘을 박아 놓으니, 그 말이 먹지 못하여 볼품없이 파리해졌다. 왕이 마구를 살 펴보고 뭇 말이 모두 살찐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그 파리한 말을 주몽에게 주었다. 주몽은 곧 혀에 박았던 바늘을 뽑아내고 전보다 더 잘 먹였다. 뒤에 사 냥할 적에도 주몽이 잘 쏘았다. …… 盖斯水에 이르러 물을 건너려 하니 배가 없었다. 주몽은 쫓아오는 군사들의 추격이 두려워 채찍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 며 탄식하기를. "나는 천제의 자손이요 하백의 외손으로서 도망하여 이에 이르 렀는데, 추격하는 자가 뒤쫓고 있으니 어찌합니까?" 하며, 활로 물을 치니 고 기와 자라 떼가 물위에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 주몽이 그를 타고 무사 히 건너자 고기와 자라 떼가 곧 흩어져 뒤쫓던 기병이 물을 건너지 못하였다. 처음 주몽이 어머니와 차마 작별하지 못하니. 그 어머니가 역려하지 말라 하면 서 곧 五穀의 종자를 싸서 주었다. 주몽은 麥種을 잃어버리고 와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두 마리의 비둘기가 날아와 앉았다. 주몽은 이것이 어머니가 보 리씨를 보낸 것이리라 하고 활로 쏘아 단발에 두 마리 다 얻었다. 그 비둘기의 목구멍을 열어 과연 보리씨를 얻어내고, 물을 뿜으니 비둘기가 곧 소생하였다. 주몽이 도중에 세 사람을 만났다. … 沸流에 정착하여 거기에서 살았다."

⇒ 李奎報「東明王篇」所引『舊三國史』逸文과 상응

사료(마)-⑤『東史綱目』附 卷上 中, "怪說辨證"

『古記』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주몽이 처음 卒本에 이르러 비류수 속 에 菜葉이 떠내려 오는 것을 보고 상류에 사람이 있음을 알았다. 그리하여 사 냥하면서 찾아가니 과연 비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 국왕 송양은 비 범한 주몽의 용모를 보고. "과인이 유벽한 海外에 있어 군자를 만나보지 못하 였는데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하니, 주몽이 대답하기를, "나는 천제의 아들 로서 西國의 왕이오. 감히 묻노니 군왕께서는 누구의 후예인가?" 하였다. 왕 이. "나는 僊人의 후예로 여러 대를 왕 노릇하였으나. 이곳은 땅이 작아 두 임 금을 용납하기 어렵다. 그대는 도읍을 정한 지 얼마 안 되니 우리의 附庸이 되 는 것이 어떠하냐?" 하니, 주몽은 이 말에 분노하여 이르기를, "과인은 천제의 후예이다. 지금 왕은 신선의 후예가 아니면서 참람하게 왕이라 호칭하니. 만 약 나에게 귀부하지 않으면 하늘이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였다. 왕은 주몽이 늘 천제의 후손이라 일컬으므로 마음속으로 의심을 품고 있다가 그 재주를 시 험해 보고자 하며 이르기를. "그대와 활쏘기를 겨루고자 한다." 하고 그는 그 린 사슴을 1백 步 안에 놓고 쏘았는데 화살이 사슴의 배꼽에 들어가지 않았고, 주몽은 玉指環을 1백 보 밖에 걸어 놓고 쏘았는데 기왓장처럼 부서졌다. 그리 하여 왕이 감히 항거하지 못하였다. 주몽의 國業은 새로 조성되었으나 의식이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왕의 예도에 결함이었다. 從臣 扶芬奴가 나와 아뢰기 를, "대왕이 扶餘에서 곤욕을 당하다가 만 번이나 죽을힘을 내어 遼左에 와 이 름을 날리게 되었으니, 이는 천명이라 무슨 일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하며, 세 사람과 함께 비류국에 가 기물을 가져오니, 왕이 사람을 보내 사실을 고하 였다. 주몽이 이를 두려워하여 몰래 角色을 두드리자 왕이 감히 다투지 못하 였다. 또 왕은 도읍을 세움의 선후 차례로 부용을 삼고자 하였는데, 주몽이 썩 은 나무로 기둥을 세워 집을 짓고 있으므로 송양이 이를 와 보고 또한 다투지 않았다. 주몽이 서쪽을 순행하다가 흰 사슴 한 마리를 얻어 그 사슴을 蟹原에 다 거꾸로 매달고 저주하기를. "하늘이 만약 비를 내려 비류국의 왕도를 쓸어 버리지 아니하면 내 진실로 너를 풀어주지 않으리라." 하니, 그 사슴의 슬픈 울 음소리가 하늘에 사무쳐 7일 동안 장마가 져서 송양의 도읍을 쓸어버렸다. 왕 은 葦索을 물에 건너지르고 鴨馬를 타니 백성들은 모두 그 위삭을 잡았다. 주 몽이 채찍으로 물을 그으니 물이 곧 줄었는데, 송양이 나라를 들어 항복하였

다. … 東明王 3년 7월에 검은 구름이 鶻嶺에 일어나 사람들은 그 산을 볼 수 없었고, 오직 수천 명의 사람 소리만 들리며 十功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주몽 이, "나를 위해 성을 쌓는다." 하였다. 7일 만에 雲霧가 걷히자 성곽과 궁궐이 이루어졌다. 주몽은 곧 하늘에 배례를 올리고 그 궁궐로 나아갔다."

⇒『三國史記』高句麗本紀,李奎報「東明王篇」所引『舊三國史』逸文과 상응

사료(마)-⑥『東史綱目』附 卷上 中, "怪說辨證"

『東國通鑑』 · 『纂要』 · 『古記』에도 다 같다. 『古記』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 다. "유리가 부러진 칼을 바치니 왕이 가지고 있던 칼을 내어 맞춰 보는데, 피 가 흐르며 이어져 하나의 칼이 되었다. 왕이 유리에게 말하기를, "네가 진실로 내 아들일진대 무슨 신술이 있느냐?" 하니, 유리가 공중으로 몸을 솟구치면서 창문 사이로 비치는 햇빛을 타고 올라가니. 왕이 그 신술을 보고 크게 기뻐하 며 태자로 삼았다."

⇒ 李奎報 「東明王篇」所引 『舊三國史』 逸文과 상응

사료 (마)-⑦ 『東史綱目』 附 卷上 中, "怪說辨證"

『고려사』 지리지에 『古記』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적었다. "태초에 사람 이 없었는데, 세 神人이 땅에서 솟아 나와 첫째를 良乙那, 다음을 高乙那, 그 다음을 夫乙,那라 하였다. 세 사람이 사냥을 하다가 紫泥로 봉한 木函이 東海 가에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가서 열어 보니, 목함 안에 石函이 들어 있었고 紅 帶紫衣 차림의 使者가 따라왔다. 석함을 여니 푸른 옷을 입은 처녀 셋과 망아 지·송아지 그리고 五穀 종자가 나왔다. 사자가, "나는 日本國 사신입니다. 우 리나라 임금께서 이 세 딸을 낳으시고 말씀하기를 '西海中의 嶽神이 神子 셋 을 낳아 장차 나라를 열고자 하나 배필이 없다.' 하시고 신에게 명하여 세 딸을 모시고 가게 하였습니다."하고, 곧 구름을 타고 가버렸다. 세 사람은 나이의 차 례로 나누어 장가들었다."

➡ 『高麗史』 권57. 地理志 2. 耽羅縣 條 所引 『古記』와 상응

위에서 제시한 사료 (마) "怪說辨證"에 인용된 『古記』 逸文 또한 대체 로 고려 시기 문헌에서 찾아지는 것들이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東明王 篇」 所引 『舊三國史』 逸文으로 보이는 많은 구절에 대해 安鼎福은 『古 記』의 기록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뒤에서 다시 검토하겠지만. 이 러한 점은 당시 安鼎福이 본 『古記』가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 인용 된 그것과 성격을 달리하는 사서임을 암시한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료 (마)-②에서 『古 記」를 인용하며 전하는 "檀君이 非西岬 河伯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았으니 이가 夫婁인데, 禹 임금이 塗山에서 회합을 가질 적에 부루를 보내어 조회하게 하였다."는 대목이다. 檀君이 非西岬 河伯의 딸에게 장 가들어 아들 夫婁를 낳았다는 부분까지는 『帝王韻紀』 所引「檀君本紀」 (檀君古記)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禹 임금의 塗 山 회합에 夫婁를 보내어 조회하였다는 대목은 고대 기록을 닦은 고려 시 기 문헌에서 찾아지지 않는다. 대신 이는 權擥의 『應製詩註』에 "『古記』에 서 이르기를, … 아들을 낳아 檀君이라 하니, 唐堯와 같은 날에 즉위하고 國號를 朝鮮이라 하였다. 처음 平壤에 도읍하였다가 후에 白岳에 도읍 하였다. 非西岬 河白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아 夫婁라 하니, 그를 東夫餘干으로 삼았다. 禹 임금 시대에 이르러 이 塗山에서 諸侯가 회합 을 가지니, 檀君은 아들 夫婁를 보내 조알하였다. 檀君은 虛夏 시대를 지 나 商 武丁 8년 乙未에 이르러 阿斯達山으로 들어가 신선이 되었다. 지금 黃海道 文化縣 九月山이다. 그 廟가 지금에 이르러 전한다. 享年 1048세 로 그 뒤 164년이 지나 己卯에 箕子가 와서 봉해졌다."라는 대목, 그리고 『世宗實錄地理志』에 "『檀君古記』에서 이르기를, … 檀君이 非西岬 河伯 의 딸에게 찾아가 장가들어 아들을 낳으니 夫婁라 하였는데, 그를 일러 東 扶餘王이라 하였다. 檀君은 唐堯와 더불어 같은 날에 즉위하였는데, 禹 임금 시대에 이르러 塗山 회합 太子 夫婁를 보내 조알하였다. 나라를 다 스리기를 1038년, 殷 武丁 8년 乙未에 이르러, 阿斯達에 들어가 神이 되 었다. 지금의 文化縣 九月山이다."라는 대목에서 보듯 조선 초기 문헌에 서 확인된다. 안정복은 『東史綱目』 "採據書目"에 『應製詩註』를 적기하고 있기에. 혹 이를 통해 해당 구절을 인용하여 쓴 것일 가능성도 있다.

이로 보아 대체로 안정복이 『東史綱目』에서 인용한 『古記』 逸文은 거 의 대부분 현전하는 『삼국사기』・『삼국유사』・『帝王韻紀』・「東明王篇」 所引 『舊三國史』 逸文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라 하겠다. 또한 고려 시 기 문헌에서 찾아지지 않는 逸文도 대체로 조선 초기 문헌에서 확인되는 것들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하고 보면, 안정복이 보았다는 『古 記』一冊의 존재는 더욱 의심될 수밖에 없다. 그가 서책으로서의 『고기』 를 본 것이 아니라 당시까지 전하던 여러 문헌에 산재한 『古記』 逸文을 보았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렇게 단정하 기에는 아직 이르다. 앞서 언급한 대로 李居仁이 작성하였다는 蓮花夫人 과 관련한 『古記』 逸文 문제가 남아 있다.

Ⅲ. 조선 시기 유통된 『古記』의 史書的 성격과 성립 시점

金昌翕(1653~1722)의 外孫女는 몸이 불편한 외할아버지 곁에서 등 불을 밝히고 『古記」를 읽었는데, 이를 듣는 金昌寫은 奇聞을 들으며 감 탄을 했다고 한다. 19세기 전반에 활동한 李圭景은 『五洲衍文長箋散稿』 에서 『古記』를 가짜 책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하였고, 韓鎭書는 『古記』를 불신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른바 『古記』 및 『潦史』 地理志는 모두 근 거로 삼지 말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나라의 輿地를 밝힐 수가 있 다."라고 주장하였다. 또 張志淵(1864~1921)은 『東史古記』가 稀有하여 구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를 통해 그가 『古記』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 은 알 수 있다. ¹²⁾ 이상의 사례는 모두 조선 중·후기에 걸쳐 서책으로서의 『古記』가 유통되고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古記』에 대해 언급한 조선 후기 지식인들이 대 체로 『古記』의 사료적 가치를 불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李圭景은 이 를 "가짜 책"이라고 하였고, 韓鎭書는 '이른바 『古記』'라고 하며 이를 근 거로 삼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 안정복 또한 『東史 綱目』에서 『古記』에 대한 불신을 여러 차례 드러내 보인 바 있다. 그렇다 면 어째서 이들은 『古記』를 이토록 불신하였던 것일까. 단순히 허황되고 신이한 기록이 많아서, 또 그 내용에 불교적 관념이 가득하였기 때문이었 을까. 조선 후기 지식인들에게 있어 불교적 관념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는 『三國遺事』의 경우도 비판의 대상은 될지언정 『古記』와 같이 사료로서 철저하게 배제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古記』에 대한 이들의 비판이 단 순히 내용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古記』가 가지는 사서로서의 어떤 취약점 을 겨냥하였던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살펴보았듯 본문을 시작할 때 제시하였던 안정복의 증언을 비롯하여 『古記』에 대한 조선 시기 여러 문인의 언급에 근거한다면. 분명 조선 시기 『古記』는 서책의 형태로 유통되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고 보면 사실 조선 초에 『古記』가 사서로서 존재하였음은 『高麗史』(1450) · 『世宗 實錄地理志」(1452) · 『應製詩註』(1461) 등에 인용된 『古記』 逸文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이들 문헌에 인용된 『古記』 구절 가운데 고려 시기 문헌에

¹²⁾ 김상현, 「『古記』의 사학사적 검토」, 298~300쪽.

서는 볼 수 없는 기록이 상당수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라)-①에서 보듯 許筠은 李居仁이 쓴 문장이 다수 보이는, 또 '蓮花夫人' 전승이 수록 된 『古記』를 보았다고 하였다. '蓮花夫人' 관련 기록은 許筠의 언급 대로 李居仁의 손을 거친 『古記』에 그 내용이 가장 자세히 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蓮花夫人 관련 기록은 사실 『高麗史』 卷71. 志 25. 樂 2에 실려 있는 「溟州」歌에 기초하여 2차 가공을 거친 이야기다. 『高麗史』에 실린 「溟州 歐와 앞서 제시하지 않은 『惺所覆瓿藁』의 蓮花夫人 기록을 전재하면 아래와 같다.

사료 (바)-①『高麗史』卷71, 志 25, 樂 2, 溟州

세간에 전해지기를, 어떤 서생이 여기 저기 떠돌면서 공부하다가 명주에 이르러서 한 양가집 딸을 보았는데 아름다운 얼굴에 글도 꽤 알았다. 서생이 시로 그 여자를 꼬드겼더니 여자가 말하기를, "여자는 함부로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서생께서 과거에 급제하기를 기다렸다가 부모님의 허락이 있다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서생이 바로 서울[京師]로 돌아 가서 과거 공부를 익히는 중에, 여자의 집에서는 사위를 들이려고 하였다. 여 자가 평소에 연못에 가서 물고기에게 밥을 주곤 하였기에, 물고기는 기침소리 를 듣기만 하면 꼭 나와서 밥을 먹었다. 처녀가 물고기에게 밥을 주면서 말하 기를, "내가 너희들을 기른 지 오래되었으니 당연히 나의 마음을 알 것이다."라 고 하면서. 명주에 쓴 편지를 던졌더니 큰 물고기 한 마리가 뛰어올라서 편지 를 입에 물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서생이 서울에 있던 중, 하루는 부모를 위하 여 반찬을 마련하려고 물고기를 사 가지고 돌아왔는데 물고기의 가른 배 속에 서 명주에 쓴 편지를 얻었다. 놀라고 기이하게 여겨 즉시 명주에 쓴 편지와 자 기 아버지가 쓴 편지를 가지고 길을 가로 질러 여자의 집으로 갔더니. 사위가 이미 문에 도착하였다. 서생이 편지를 여자의 집안사람들에게 보여 주고는 드 디어 이 곡을 노래하였다. 여자의 부모가 기이하게 여겨 말하기를. "이는 정성 에 감동된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고, 그 사위 를 돌려보내고 서생을 받아들였다.

사豆(叶)-②『惺所覆瓿稿』卷7. 文部 4. 記. "鼈淵寺古莎記"

신라 때 명주는 동원경이었으므로 留後官은 반드시 왕자 및 宗戚・將相・ 大臣이 맡게 하고 凡事에 그 예하 郡縣에는 편의대로 黜陟하게 하였다. 王弟 無月郞이란 사람이 있어 어린 나이로 그 직을 맡았는데. 업무는 보좌관의 말 을 좇아 대신 다스리게 하고, 자기는 화랑도를 이끌고 산수간에서 놀았다. 하 루는 혼자 소위 연화봉에 올랐더니 한 처녀가 있었는데 용모가 매우 뛰어났으 며 石池에서 옷을 빨고 있었다. 郞은 기뻐하여 그 여자를 유혹하였더니, 처녀 는, "저는 士族 출신이라, 예를 갖추지 않고 혼인할 수는 없습니다. 낭께서 만 약 미혼이시라면 혼약을 행할 수 있으니, 육례를 갖추어 맞이하셔도 늦지 않 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낭께 몸을 허락하였으니, 다른 데로 시집가지 않을 것 을 맹서합니다." 했다. 낭은 이를 허락하고, 이후에 안부를 묻고 선물 보내기 를 끊이지 않았다. 임기가 차서 낭이 鷄林으로 돌아가 반년 동안 소식이 없자 그 아버지는 여자를 장차 北坪 집안 총각에게 시집을 보내기로 하여 이미 날 까지 받아놓았다. 여자는 감히 부모에게 사뢰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몰래 걱정 하다가 자살하기로 결심했다. 하루는 연못에 가서 옛날의 맹서를 생각하고, 기 르던 연못 속의 황금 잉어에게, "옛날에 잉어 한 쌍이 서신을 전했다는 이야기 가 있는데 너는 내게서 양육을 받은 적이 많았으니 낭이 계신 곳에 나의 뜻을 전할 수는 없겠니?" 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1자 반쯤 되는 황금 잉어가 못에서 튀어 올라와 입을 딱 벌리는데, 승낙한다는 것 같았다. 여자는 이를 이상스럽 게 여기고, 옷소매를 찢어 글을 쓰기를, "저는 감히 혼약을 위배하지 않을 것이 나. 부모님의 명령을 장차 어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낭께서 만약 맹약을 버리 지 않으시고 달려서 아무 날까지 도착하시면 그래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하 면 저는 마땅히 자살하여 낭을 따르겠습니다." 하였다. 이것을 잉어의 입 속에

넣고 큰 내에 던졌더니, 잉어는 유유히 사라졌다. 다음날 새벽에 무월랑은 관 리를 閼川에 보내어 고기를 잡게 했는데. 관리가 횟거리 생선을 찾다보니 금 빛 나는 1자짜리 잉어가 갈대 사이에 있었다. 관리가 낭에게 갖다 보였더니, 잉 어는 펄쩍 뛰면서 재빨리 움직여 마치 호소하는 것이 있는 듯했으며 잠시 후 거품을 한 되쯤 토했는데 그 속에 흰 편지가 들어 있어, 이상히 여기고 읽어 보 니 여자가 손수 쓴 것이었다. 낭은 즉시 그 편지와 잉어를 가지고 왕에게 아뢰 었다. 왕은 크게 놀라면서 잉어를 궁중의 연못에 놓아주고 빨리 대신 한 사람 에게 명하여 채색 비단을 갖추게 하고 낭과 함께 동원경으로 말을 달려가게 하 므로, 즉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서 겨우 기약한 날짜에 대었다. 도착해 보니 留後 이하 여러 관리와 고을 노인들이 모두 장막에 모였는데 잔치가 무 척이나 성대하였다. 문을 지키는 관리가 낭이 오는 것을 괴상히 여기고, "무월 랑이 옵니다."고 소리쳐 전하였다. 留後官이 나와 맞이해 본즉 대신이 따라왔 다. 드디어 사연을 갖추어 주인에게 알리었다. 북평의 신랑은 이미 도착하였으 나, 대신이 사람을 시켜 멈추게 했다. 여자는 하루 앞서부터 병을 핑계대고 머 리도 빗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았으며 어머니가 강요해도 듣지 않아 꾸지람과 가르침이 한창 더해지는데, 낭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벌떡 일어나 화장을 하 고 옷을 갈아입고 나아가, 양가의 혼인을 잘 이루었으므로 온 부중 사람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었다. 부인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장남은 곧 주원공이고 차남은 敬信王이다. 바야흐로 신라의 왕이 죽으매 후사가 없자 나라 사람이 모두 주워을 촉망했으나, 그날 크게 비가 내려 알천에 갑자기 물이 불었다. 주 원이 알천의 북쪽에 있으면서 건너지 못한 지가 3일이나 되자, 國相은, "이것 은 천명이다."하고, 마침내 경신을 들어세웠다. 이로써 주원은 마땅히 즉위해 야 했음에도 즉위를 못하고, 강릉 땅에 封해져서 주변의 여섯 읍을 받아 溟原 郡의 왕이 되었다. 부인은 주원에게 가서 봉양을 받았는데, 그 집을 절로 만들 었으며, 왕은 1년에 한 번씩 와서 뵈었다. 四代에 이르러 나라가 없어지고 명 주가 되면서 신라도 망했다.

『고려사』에서는 「溟州」歌를 고구려의 樂으로 전하며, 이는 거의 그대 로『新增東國輿地勝覽』(1611) 刊44. 江原道 江陵大都護府 圣나 『輿地 圖書 (1760) 江原道 江陵府 조에도 전하고 있다. 반면, 이러한 書牛과 溟 州 여인의 이야기가 無月郞과 蓮花夫人의 로맨스로 탈바꿈하며 내용이 풍부해지게 된 것은 『江陵金氏派譜』(春, 遺事條)、『臨瀛誌』(1788). 申景 濬의 『疆界誌』(18세기 후반) 등에 나타나는데. ¹³⁾ 金周元이 江陵 金氏의 시조라는 점에서 이 설화의 정착은 汀陵 金氏와 밀접하게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無月郞과 蓮花夫人 이야기는 강릉 김씨 시조 金周元에게 신 이성을 부여하고 시조 家系를 선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기존에 전 승되어 오던 「溟州」歌를 가지고 구성해낸 설화라는 것이다. ¹⁴⁾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점은, 江陵金氏 族譜의 성립 과정에 李居仁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李居仁은 江陵 金氏의 외손으 로 최초의 江陵金氏 族圖 편찬에 관계한다. 族圖는 족보의 초기 형태로 汀陵金氏 族圖는 고려 말과 조선 초에 걸쳐 2차례 작성되었다. 특히 고려 말 至正年間(1381~1367)에 작성된 族圖는 李居仁에 의해 작성되어 江 廢府에 보관되었다고 한다. 李居仁은 고려 恭愍王代 강릉 김씨 시조 김 주원의 17세손 金繼貂의 외손으로 江陵府使에 부임하여 萬世祠에 봉안 되어 있던 溟州郡王 金周亓의 世系를 '江陵金氏 王族圖'라 칭하고 金閼 智에서부터 신라·고려에 이르는 世系圖를 編製하여 府司에 보관하였다 고 한다. 물론 고려 말. 조선 초에 걸쳐 작성된 두 族圖는 모두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현전하지 않지만, 江陵金氏 族譜 가운데 현존하는 最古本인 1565년 金添慶이 작성한 江陵金氏族譜(大同譜) 『乙丑譜』에서는 이 族 圖를 기준으로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15)

¹³⁾ 김창룡. 「「溟州 歌의 설화적 연구 -시대 논의를 중심으로-」. 『동양학』 27, 1997. 20~22쪽.

¹⁴⁾ 김창룡, 「「溟州」歌의 설화적 연구 -시대 논의를 중심으로- , 23~24쪽.

이로 보아 無月郞과 蓮花夫人의 이야기의 성립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기록으로 정착한 것은 바로 이 무렵, 至正年間 李居仁이 江陵金氏 族圖를 작성하는 때와 궤를 같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의의 끝에서 『古記』에 李居仁의 문장이 많이 보인다는 許筠의 언급을 다시 주목할 수밖에 없다. 즉 許筠이 말한 대로 『古記』에 李居仁의 문장이 다수 介在되어 있다면, 許筠이 『古記』에서 인용한 無月郞과 蓮花夫人의 이야기 또한 江陵金氏 族圖를 작성하였던 李居仁에 의해 『古記』에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여기서 李居仁이 여말선초에 걸쳐 활동한 인물이었음을 고려하면 이시기에 그의 문장이 다수 介在되어 있다는 『古記』가 세상에 나왔다고 볼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高麗史』・『世宗實錄地理志』・『應製詩註』 등 조선 초기 문헌에 인용된 『古記』는 許筠이 보았다는 『古記』, 즉 李居仁의 손을 거친 『古記』일 가능성이 현재로서 가장 크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한다. 즉 조선 전반기에 서책의 형태로 문인들에게 읽힌 『古記』는 아마도 李居仁의 손을 거친 책이었던 것으로 일단 추정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安鼎福이 얻어 보았다는 『古記』一冊도 李居仁의 손을 거친 『古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安鼎福이 『東史綱目』에서 인용한 蓮花夫人 관련 『古記』 逸文은 곧 李居仁의 손을 거친 『古記』의 내용으로부터 비롯한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安鼎福이 『東史綱目』 "採據書目"에서 밝힌 여러 서책 가운데 蓮花夫人 관련 기록이 수록된 다른 책, 예컨대 許筠의 『惺所覆瓿藁』 등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東史綱目』에 보이는 蓮花夫人 이야기는 실제 安鼎福이 실견한 『古記』 一冊으로부터 인용한 대목일 것으로 보인다. 정약용이 『文獻

¹⁵⁾ 이상의 내용은 차장섭, 「朝鮮時代 族譜의 編纂과 意義 -江陵金氏 族譜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2. 1997, 38~39쪽.

備考刊誤』 卷7. 輿地考에 蓮花夫人 이야기를 전하며 인용한 『古記』 逸 文(사료(라)-②)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은 安鼎福이 인용한 『古記』 逸文 가운데는 『舊三國史』 逸文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의 사료 (마)-③·④·⑤·⑥ 참조]. 즉 安鼎福이 본 『古記』에는 『舊三國 史』 逸文이 수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미 지적되었듯 『古記』와 『舊三國 史」는 서로 분명하게 구분되는 다른 사서임이 분명하다. 16) 그렇다면 결 국 安鼎福이 본 『古記』는 『三國史記』나 『三國遺事』 편찬 시에 주요 인용 자료로서 이용된 『古記』는 아닌 것이 된다. 결국 조선 초부터 유통된 『古 記」는 李居仁의 손을 거쳐 세상에 나온 것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렇다면 李居仁의 문장이 다수 介在되어 있는 『古記』는 어떤 책이었 을까. 일단 許筠이나 安鼎福. 丁若鏞 등 다수의 문사에게 『古記』로서 인 식되었음을 볼 때, 그것이 李居仁 개인의 순수 창작물이 아니었음은 확실 하다. 분명 그 안에는 사람들에게 『古記』 逸文으로 인식될만한. 그러면서 도 대부분의 逸文이 『三國史記』・『三國遺事』 등 현전하는 고려 시기 문 헌에서 확인되는 그러한 기록들이 다수 수록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아울러 고려할 때, 당시 李居仁은 『三國史記』나 『三 國遺事』 등 고려 시기 문헌으로부터 『古記』 逸文을 추려내어 수습하고, 여기에 「東明王篇」 所引 『舊三國史』 逸文 등을 더한 뒤, 그밖에 蓮花夫 人 전승 등 본인이 수집한 민간의 고대 전승 등을 더하여 일종의 "『古記』 拾遺"를 집필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¹⁷⁾ 그리고 이것이

¹⁶⁾ 李康來, 『三國史記 典據論』, 140~146쪽.

¹⁷⁾ 다만, 본 논문의 한 심사자 선생님께서 지적하였듯이 安鼎福이 보았다는 "古記 一 冊"이 李居仁이 아닌 조선시대 누군가가 李居仁의 기술이 많이 포함된 기록을 모 아 편찬한 것일 가능성도 분명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시대에 성립한 『古記』 一冊에 대해 조선시대 누군가에 의해 李居仁이 기록한 여러 고대 전승과 함께 여러 고대 관련 기록의 逸文이 수습된 결과물이었을 가능성도 일단 열어둔

『應製詩註』나 『世宗實錄地理志』、『高麗史』 찬술 당시 이용되면서. 일정 기간 사서로서의 위상도 얻게 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반대로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 주요 인용 사료로서 이 용된 『古記』는 고려 말 무렵에는 이미 逸失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한다. 만약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조선 시기 『古記』가 여러 문인에 의해 그 사서로서의 가치가 부정되며 비판되었던 사정도, 또 安鼎福 본인이 직접 실견하였다던 『古記』一冊이 『東史綱目』"採據書目"에서 빠져 있는 이 유도 이해가 가능해진다. 당시 이들이 접한 『古記』는 여러 문헌에 산재해 있는 『古記』의 逸文들을 모아 편집해 놓은 성격의 책이다 보니 사서로서 의 위상을 가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내용이 당시까지 전 하던 고려 시기 문헌에서 확인 가능한 逸文들이었기에, 한 번 훑어본 뒤 곧바로 이를 인용할 가치가 없는 문헌으로 쉽게 판단하였던 것이다. 李丰 景의 말처럼 당시 유통되던 『古記』는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눈에 '가짜 책'으로 보일 개연성은 충분했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조선 시기 소수의 문 인들에 의해 읽혀졌으나 철저하게 비판되고 외면 당하였던 서책으로서의 또다른 『古記』의 탄생과 유통의 배경이라 할 수 있겠다.

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논하는 이렇게 '만들어진 『古記』'가 『應製 詩註」나 『世宗實錄地理志』、『高麗史』 등 조선 전기에 찬술된 여러 문헌에 인용되 었다고 본다면, 그 성립 시점은 李居仁이 활동한 조선 초 이후로 많이 내려갈 수도 없다. 결국 이는 늦어도 조선 초에는 李居仁의 손을 거쳐 세상에 나온 것일 가능성 이 가장 크다고 본다.

IV. 맺음말

본 논문은 조선시대 여러 역사 문헌에 나타나는 『古記』 逸文에 주목하 고. 이를 바탕으로 『古記』에 대한 새로운 연구 가능성을 제시한 2012년 김 상현 교수의 발표문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다만, 필자의 부족한 능력으로 선행 연구 업적에 오히려 흠을 만든 것은 아닌지 걱정부터 앞서게 된다.

본문에서는 선행 연구를 찬찬히 따라가면서 安鼎福이 구해 보았다는 『古記』 一冊을 실마리 삼아 조선 시기 여러 문헌에 보이는 『古記』와 관련 한 언급 및 그 逸文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安鼎福이 보았다는 『古記』는 조선 초 李居仁의 손을 거치며 만들어진 일종의 '古記拾遺'와 같은 성격 의 사서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여기에는 고려 시기 각종 문헌에 보이는 『古記』 및 『舊三國史』 逸文 을 수습하여 정리한 기록들이 중심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또 이밖에 당 시까지 민간에 전하던 고대 전승이 수집되어 일부를 이루었던 것으로 추 정되다. 이 책이 조선 시기 여러 문인들에 의해 그 사서로서의 가치가 철 저하게 부정되고 외면당하였던 이유는 물론 그 기록이 가지는 특수성에 기인한 면이 크겠지만. 그와 함께 이와 같은 사서적 성격도 한 요인이 되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23.11.15. 투고 / 2023.12.20. 심사완료 / 2023.12.24. 게재확정)

[Abstract]

A Reexamination of the *Gogi*(古記) as a Historical Record found in the Literature of the Joseon Dynasty

Lee, Seung-ho

This paper focuses on quoted passages from *Gogi*(古記) that appear in various historical documents of the Joseon Dynasty, and based on this, started from Professor Kim Sang-hyeon's presentation in 2012, which suggested new research possibilities for *Gogi*. In the main text, I looked at references and quotations related to *Gogi* in various documents of the Joseon Dynasty using the book *Gogi* that Ahn Jeong-bok is said to have sought as a clue. As a result, it was concluded that the *Gogi* that Ahn Jeong-bok saw was highly likely to be a history book of the same character as 'a collection of supplement copies' created by Lee Geo-in(李居仁)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is book was compiled focusing on records that collected and organized quotations from *Gogi* found in various historical documents of the Goryeo Dynasty. In addition, it is presumed that the ancient traditions that had been passed down to the public until then were collected and formed part of them. The reason why this book's value as a history book was completely denied and ignored by many intellectuals during the Joseon Dynasty was due to the unique nature of the records, but it is also believed that its nature as a history book was also a factor.

 \square Keyword

Gogi(古記), Old-samguksa(舊三國史), Ahn Jeong-bok(安鼎福), Dongsagangmok(東 史綱目), Lee Geo-in(李居仁)

[참고문헌]

논문 및 저서

- 김상현, 「『古記』의 사학사적 검토」, 『한국고대사연구』 74, 2014.
- 김성환, 「『삼국유사』 「고조선」조의 古記論」, 『선사와 고대』 69, 2022.
- 김영경,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보이는 〈고기〉에 대하여」, 『력사과학』 1984-2.
- 김정배,「檀君記事와 관련된「古記」의 性格」, 『韓國古代史上의 諸問題』, 韓國精神文化研究, 1987.
- 김창룡, 「「溟州」歌의 설화적 연구 -시대 논의를 중심으로-」, 『동양학』 27, 1997.
- 朴姚娟, 「史書로서의 『삼국유사』와 『古記』 연구의 흐름」, 『震檀學報』 130, 2018.
- 申東河,「三國史記 高句麗本紀의 引用資料에 관한 一考」,『三國史記의 原典 檢討』,韓國精神文化研究, 1995.
- 申恒秀, 「이익과 안정복의 고려 말 역사 서술에 대한 논의와 『동사강목』」, 『震檀學報』117, 2013.
- 李康來,「三國史記斗古記」,『龍鳳論叢』 17・18, 1989.
- 李康來,「『三國遺事』引用「古記」의 性格」, 『書誌學報』 7, 1992.
- 李康來, 『三國史記 典據論』, 민족사, 1996.
- 이기백,「順庵安鼎福의 合理主義的事實考證」,『한국실학연구』창간호, 1999.
- 전덕재, 『三國史記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2018.
- 전덕재, 『三國史記 잡지·열전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2021.
- 정구복, 「三國史記의 原典 資料」, 『三國史記의 原典 檢討』, 韓國精神文 化研究, 1995.

차장섭,「朝鮮時代 族譜의 編纂과 意義 - 江陵金氏 族譜를 중심으로- 1. 『조선시대사학보』 2, 1997.

인터넷 자료

- 한국고전번역원, 「동사강목(東史綱目)」, 《한국고전종합DB》. 마지막 검색일 2023.12.22.
-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grpId=&itemId=B T&gubun=book&depth=2&cate1=Z&cate2=&dataGubun=%EC%8 4%9C%EC%A7%80&dataId=ITKC BT 1366A
- 한국고전번역원,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한국고전종합DB》. 마지막 검색일 2023.12.22.
- https://db.itkc.or.kr/dir/item?itemId=BT#dir/node?grpId=&itemId=B T&gubun=book&depth=2&cate1=Z&cate2=&dataGubun=%EC%8 4%9C%EC%A7%80&dataId=ITKC_BT_0292A